

#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두는 부지사 및 실·국·본부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지사) ① 도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지도·감독

③ 정무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지사를 대리한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한 각종 정무적 협의에 관한 업무
3. 도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
4.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5. 국회 등과 관련되는 대외 업무의 협조
6.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
7.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실·국·본부의 설치) 충청북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실, 기획관리실, 내무국, 보건환경국, 사회복지국, 농정국, 공업경제국, 건설교통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를 둔다.

제4조(감사실) 감사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감사 및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처리 업무
2. 산하단체·협회·조합(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한함)에 대한 감사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기강 확립 업무

제5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정의 종합기획·조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
3. 예산의 편성 및 투자사업 심사
4. 조례와 규칙의 심사
5. 소송사건 관련 업무와 법규의 편찬
6. 행정 전산화 관련 업무
7. 통계의 처리와 유지관리
8. 도정 전반에 걸친 정책연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공기업에 관한 사항

제6조(내무국) 내무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각종 의전행사의 조정·집행 총괄
2. 인사와 포상, 각종 시험 업무
3. 지방행정시책 및 시·군의 지도·조정에 관한 사항
4.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6. 사회진흥에 관한 사항
7. 지방세제도의 운영 및 세외수입의 과징
8. 예산의 지출, 결산 및 공유재산 관리
9. 민원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10. 문화예술육성, 문화재 보존관리 및 체육진흥, 청소년 관련 업무
11. 다른 실·국·본부의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 (보건환경국) 보건환경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보건행정에 관한 기획 조정
2. 의무·약무·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3.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4. 공중 및 식품위생의 관리 및 지도 감독
5. 환경의 보전과 지도 감독
6. 상·하수도의 관리

제8조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사회복지행정의 기획 조정
2.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운영
3. 생활보호 및 구호사업
4. 가정복지 증진
5. 여성복지의 향상
6. 사회복지법인의 허가 및 지도 감독

제9조 (농정국) 농정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정책의 수립 및 농정시책 총괄
2. 농업생산과 양정 업무
3. 농지의 관리와 농지의 개량
4. 농업용수의 개발과 수리시설의 관리
5.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6. 축산과 수산에 관한 사항
7.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

제10조 (공업경제국) 공업경제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공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기획 조정
2. 기술진흥 및 공산품 품질관리
3. 지역경제계획수립 추진 및 동향의 분석·관리
4. 관광의 진흥

제11조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과 개발
2. 건설기계의 관리, 등록, 검사
3. 도시계획 관련 업무 및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적관리의 기획·조정 및 토지거래에 관한 사항
5. 주택행정 종합계획, 건설업 면허에 관한 사항
6. 하천관리 및 방재대책과 집행
7. 도로와 교량의 유지 관리
8.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

제12조 (민방위재난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민방위 교육훈련 및 경보통제소 운영
3. 동원에 관한 사항의 조정 통제
4. 비상대책에 관한 업무
5. 재난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사항

제13조 (소방본부) 소방본부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소방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유지 관리
3. 소방훈련 및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4. 구조대책 및 구급 업무

제14조 (담당관·과 등의 설치) 담당관·과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6. 1. 22.

제안자 : 윤병태의원외 7인

## 1. 수정이유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직으로 공업경제국을 설치함에 따른 사무분장 내용에 있어 공기업 및 공유재산관리의 사무에 대해 공업경제국에 편재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업무기능상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 공기업분야는 도정의 기획조정부서인 기획관리실 소관사무로 공유재산관리분야는 내무국 회계 및 재산관리분야로 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2. 수정 주요골자

- 공업경제국 사무분장 내용 중 공기업 및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사무를 기획관리실과 내무국소관 사무내용으로 조정  
(안 제10조 제4호 → 제5조 제9호, 제10조 제5호 → 제6조 제8호)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공기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예산지출, 결산 및 공유재산관리

안 제10조 중 4호 및 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4호로 한다.